

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
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청원
심 사 보 고

1. 청원일자 및 청원자

가. 일 자 : 2002. 11. 12(2002-2)

나. 제출자 :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(노영우, 김범추, 곽동철)
(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)

2. 심사일정

가. 심 사 일 : 제207회 정례회 제2차교육사회위원회(2002.12.4)

나. 주요내용 : 검토보고 및 심사의결

3. 소개의원 및 출석공무원

가. 소 개 : 김문천의원

나. 출석자 : 사회복지과장 임현, 총무과장 우혁성

4. 청원요지

가. 청원취지

- 현재 장애인·노인·모자가정(이하 장애인이라 함) 등의 생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으나,
- 현실적으로 공공시설 등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등 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해준 실적이 크게 저조한 한 바
-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게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허가 및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자판기 등을 허가·위탁시 1개월전에 자치단체 공보, 일간신문, 인터넷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공고하며
- 계약시 장애인들이 우선계약 대상자가 되도록 우선순위를 두며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보장하고
- 설치 허가·위탁시 위탁받은 자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토록 하며
-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계약의 공정성을 기함과
- 직접운영의 의무위반, 관리상의 해태, 위탁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
- 제도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과정 및 위탁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등 임.

5. 검토보고 요지 : 전문위원 임석규

- 관련법의 조례제정의 필요성
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일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
 -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. (장애인복지법 제38조 등)
- 각 시·도의 동 조례안 제정 현황
 - 광주광역시가 '92년에 동 조례안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'95년에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이후 활발하게 동조례의 제정함을 볼 수 있으며(시·도별 제정안 : 별첨)

○ 각 시·도의 동 조례안 입법발의 현황

- 의원 입법발의로 제정한 시도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있고
- 집행부에서 발의한 곳은 부산광역시의 9개 시도가 있음.

○ 현재 동 조례안을 추진중이거나 제정하지 않은 곳

- 대전광역시, 충남, 전남, 경남, 제주도 등 5개소

○ 우리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·사업소와 유관기관(청주·충주의료원)의 11월 현재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은

- 매점이 6개소로 전부 일반인이 운영
- 자동판매기는 총 67대로 이중 장애인이 4대, 일반인이 63대를 각각 운영(위탁 및 자체)하고 있음.

○ 상기에서 동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살펴본 바

- 동 조례안의 제정은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정안을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.
- 동 조례안 제정 입안시 집행부에서는
 - 장애인과 일반인(단체포함)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시 배분비율과(양자 50% 보장)
 -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시 우선순위의 대상자 내역
(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, ②미과세대상자, ③저소득자, ④ 중증장애인, ⑤부양가족이많은자 등)
 - 적용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와
(①장애인복지법제2조에의한 장애인, ②노인복지법제21조에의한 65세이상 노인, ③모자복지법제4조에의한 모자가정의 여성, 국가유공자 등)

- 매점설치의 면적(m²)과 계약 보장기간(3년)
- 의무이행사항을 해태 할 경우의 제재사항 명시 등
- 입안 단계부터 관련단체의 의견과 장애인등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
취지만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반영 조치하여야 할 것
으로 사료 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우혁성 총무과장 : 금번 청원된 조례제정의 취지에는 찬성
 - 본청에는 18대가 있는데 구내식당 7대, 새마을금고 7, 장애인 4대를 각각 운영하고 있음.
 -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이익금은 6,900만원 정도로 공무원들이 중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있음.
 - 장애인들에게 50%정도까지 대여할 경우에 구내식당 식비 인상과 도청새마을금고 운영이 위축 됨.
- 임현 사회복지과장
 - 구내식당 및 새마을금고의 식비단가 및 재정운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종합 검토하여 제정토록 하겠음.
- 김문천의원
 - 전주시가 대표적으로 실시하여 실효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음.
 - 우리 생활틈새를 이용하여 작으나마 장애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됨.
- 이범윤의원
 - 장애인 및 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, 즉 허가 받은 자가 하고 있으나, 정확히 파악하여 제정시 검토하겠다.

- 조계숙의원
 - 다른 시도는 이미 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. 조속히 제정토록 하겠다.
- 이범윤의원
 - 각 시도는 장애인에게 몇 대를 주고 있는가 30%에서 50%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.
 - 최대한도로 확보하여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
- 이기동의원
 - 각 시도가 이미 제정하였는데 시도별로 조례에서 장애인에게 배분한 비율을 참고하여 청원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 아마도 그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저항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니 적극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7. 토론요지: 생략

8. 심사결과

- 동 청원건의 조례제정은 도지사가 처리하기로 함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의견서

의 건 서

제 목	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대한 의견
<p>1. 청원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판기 등을 허가·위탁시 1개월전에 자치단체 공보, 일간신문, 인터넷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공고 ○ 계약시 장애인들이 우선계약 대상자가 되도록 우선순위를 두며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보장하고 ○ 설치 허가·위탁시 위탁받은 자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 ○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계약의 공정성을 기함 ○ 직접운영의 의무위반, 관리상의 해태, 위탁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○ 제도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과정 및 위탁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등 임. <p>2. 심사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정의 필요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 사무용품·신문 등 일일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 ·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. (<u>장애인복지법 제38조 등</u>) ○ 각 시·도의 동 조례안 제정 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광주광역시가 '92년에 동조례안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'95년에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이후 활발하게 동 조례의 제정함을 볼 수 있음. 	

○ 동 조례안의 입법발의 현황

- 의원 입법발의로 제정한 시도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있고
- 집행부에서 발의한 곳은 부산광역시의 9개 시도가 있음.

○ 현재 동 조례안을 추진중이거나 제정하지 않은 곳

- 대전광역시, 충남, 전남, 경남, 제주도 등 5개소.

○ 우리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·사업소와 유관기관(청주·충주의료원)의 11월 현재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은

- 매점이 6개소로 전부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으며
- 자동판매기는 총 67대로 이중 장애인이 4대, 일반인이 63대를 각각 운영(위탁 및 자체)하고 있음.

▶ 상기에서 동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살펴본 바

- 동 조례안의 제정은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정안을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.

▶ 아울러 동 조례안 제정 입안시 집행부에서는

- 장애인과 일반인(단체포함)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및 위탁시 배분비율과(양자 50% 보장)
-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시 우선순위의 대상자 내역
(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권자, ②미과세대상자, ③저소득자, ④중증장애인, ⑤부양가족이많은자 등)
- 적용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와
(①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, ②노인복지법제21조에 의한 65세이상 노인, ③모자복지법제4조에 의한 모자가정의 여성, 국가유공자 등)
- 매점설치의 면적(m²)과 계약 보장기간(3년)
- 의무이행사항을 해태 할 경우의 제재사항 명시 등

▶ 입안 단계부터 관련단체의 의견과 장애인등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만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반영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.